

# 사천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기어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02. 5. 17
- 나. 제출자 : 사천시장
- 다. 회부일자 : 2002. 5. 17(의안 제 26호)
- 라. 심사일자 : 제65회사천시의회임시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(2002.5.23)

## 2. 제안이유

규제사무 정비계획에 의거 현행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함.

## 3. 주요골자

- 가.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기간만료 30일전에서 20일전까지 연장 신청토록 완화(안 제5조 제2항)
- 나.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하나, 환불하는 예외규정에 “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요구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”를 신설(안 제8조제3항제3호 신설)

## 4. 전문위원 검토보고

본건은 규제 사무 완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개정으로 시민 편의를 위한 조치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.

5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없음

6. 토론요지 : 없음

7. 심사 결과 : 원안의결